

096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경력 정보를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근무 경력에 한국어까지, 이 분이 적임자네요!”

주식회사 S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생산공정이 다소 위험하고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정보는 국적, 연령, 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과 신체정보 정도에 불과해 업무에 적합한 인력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과거 근무 업종, 직무 내용, 근무 기간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식을 바꿔서 외국인근로자는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게, 기업에서는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업종과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업주가 적합한 인력 고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



개선 전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시 국적, 연령, 학력 등 기본 인적사항 및 신체정보 제공

개선 후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시 기존 인적사항 및 신체정보 이외 과거 근무경력(업종, 근무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재를 의무화
사업주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097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20% 추가 고용 가능

인력난 해소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선박기자재, 산업설비부품 등 제조업체인 D사는 근로자 수가 60여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주조 전문 뿌리산업* 기업입니다. 생산공정이 위험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지만 정해진 '고용한도'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



외국인력 도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기존 고용한도보다 20%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이 이전보다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개선 전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0% 상향 업종 : 해당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명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높은 경우

개선 후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사업장을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외국인고용허용 인원 20% 상향 업종 : 해당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명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높은 경우 또는 뿌리산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고용부, '14.1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098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한 번이면 OK!

“우리 회사 직원 대부분은 외국인인데 고용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의 고충입니다.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점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결과를 타 부처로 전송해
신고처리 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 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해 신고자들의 혼동을 없앴습니다.
신고일원화로 민원 편의 증가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의 증대

'13년 기준 13만 5,000명의 고용주 혜택
신고 한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시
67억5,0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개선 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 근로개시신고 10일 이내, 취업개시신고 14일 이내

개선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 간소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시스템 개편 (고용부, 법무부, '14.10월)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 (044-202-7147),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